

17.26

5기내 토론

3월 26일 3.4인 나중

정정리 중재 기능

한국위원회 소위원회 기준

일시: 1999.7.3(금) 오후 1시

장소: 정대협 교육관

참석: 윤정옥, 정진성, 지은희, 조시현, 양현아, 강정숙, 여순주, 양미강

안건:

인제 3기

1. 제6차 한국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및 내용 심화토론

1) 조직개편안

- 각국 위원회와 재외 동포조직과의 관계(예를 들면 독일위원회, 캐나다위원회, 미국위원회를 독자적으로 둘 것인가?, 워싱턴정대위, 재독한인여성모임 등 재외 동포조직을 한국위원회 안에 둘 것인가? 등)
- 국제자문단이나 법률자문단에 한국 포함 여부

1. 한국위원회
2. 재외동포위원회
3. 재외동포여성위원회
4. 재외동포학생위원회
5. 재외동포노인위원회
6. 재외동포청소년위원회
7. 재외동포장애인위원회
8. 재외동포문화위원회
9. 재외동포체육위원회
10. 재외동포언론위원회
11. 재외동포종교위원회
12. 재외동포언론위원회
13. 재외동포종교위원회
14. 재외동포언론위원회
15. 재외동포종교위원회

2) 취지문 내용의 검토 및 보완

- 목적 및 범위 설정의 타당성 검토
- 추가보완 사항

2. 일본측에 제안할 IOC 이름의 자료집 발간 내용 토론

- 내용 및 목차
- 협의내용

WT 기준
각국 위원회
각국 위원회
각국 위원회

3. 한국측 발간 자료집 내용 토론

- 내용 및 목차
- 일정

한국위원회 - 각국 위원회, 각국 위원회

4. 어떻게 운동을 확산할 것인가?

- 1) 국제여론 동원: 맥두걸 제안
- 2) 각 나라 조직 동원: 독일, 미국 해외조직 결합
- 3) 기획홍보위원회 활성화: 위원장 선정, 내용 및 범위
- 4) 전체 이벤트 구성, 법정 시나리오 구성 여부
- 5) 문화 프로그램 및 서명(지문)운동, 홈페이지 활용

Pre-Tribunal Symposium 실시

각국 위원회
각국 위원회
각국 위원회

5. 국내활동 재원 확보 방안 및 2000년 본 법정 부담금 확보 방안

- 현재 국내활동 재원은 2000만원 확보(만해상 기금 1000만원, 행자부 프로젝트 1000만원): 할머니 할아버지 진상규명 및 해외조사 사업, 한국위원회 활동에 배정
- 2000년 법정 한국측 부담금은 약 5000만원 정도로 예정(국제실행위원회에서)

제6차 한국위원회 보고

일시: 1999.6.24(목) 오후5시반-9시

장소: 정대협 교육관

사회: 양미강 총무

참석: 강혜숙, 박성순, 신혜수, 김신실, 김혜원, 조시현, 윤정옥, 강정숙, 양미강, 서준식, 하종문, 정진성, 신영숙, 여순주, 지정일, 김은실, 김현미, 배금자, 양현아

1. 새로 참여한 위원들을 소개하다. 강혜숙(청주대 무용학과), 박성순(음악치료)

2. 게이 맥두걸 국제심포지엄 시 법률분과 비공개회의의 결과는 양미강 총무가, 진상규명분과 비공개회의의 보고는 강정숙 위원장이 하다.

3. 일본측이 준비하고 있는 자료집에 대한 보고를 받다.

제목: 《일본군 성노예제의 가해책임을 묻는다-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을 향한 기록》 전 6권(가제)

의도: 2000년 법정에서의 재판자료의 제공, 젠더의 관점에서

구성: 1권 전범재판론(內海愛子, 高橋哲哉)

2권 가해의 정신구조와 전후사적 과제(池田惠理子, 大越愛子)

3권 조사(1): 일본, 조선, 대만 편(송연옥, 김부자) *일본인성노예기록*

4권 조사(2): 중국 편(니시노 루미코, 石田米子)

5권 조사(3): 동남아시아, 태평양 편(中原道子, 內海愛子)

6권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의 전 기록(마쓰이 야요리)

4. 일본측이 준비하고 있는 자료집 전체제목의 부제가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을 향한 기록”라는 점을 생각할 때, 자칫하면 일본이 하는 일에 한국이 들러리 서는 식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섞인 지적을 위원들 대부분이 하다. 따라서 일본측의 자료와 관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선에서 변경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다. 이특히 일본측 자료집 6권은 마치 일본측이 2000년 법정 전체를 기록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6권의 제목을 일본 편이라는 점을 분명히 부각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다.

5. 각국의 자료집 발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각 나라 모두가 공유하는 자료를 발간하는 것이라는 점에 모두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국제실행위원회(WTIOC) 이름으로 재판의 전 과정(시작, 준비과정, 판결문, 각 피해국이 제출한 자료 등등)을 담은 책을 법정이 끝난 후 영어로 내기로 하고, 빠른 시일내에 국제실행위원회에서 각국 2명씩이 참여한 편집위원회를 구성

할 것을 건의하기로 하다.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자료집을 2000년 법정을 시작하기 이전 출판할 경우, 각 피해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자국의 연구물과 출판물만을 사용키로 하다.

6. 한국위원회도 기록팀(자료집)을 구성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 등 실무에 관한 것은 진상규명팀에 일임하기로 하다.

7. 신혜수 교수가 제안한 2000년 법정의 조직 구조변경, ① 각 나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② 현재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자문위원회는 추가로 국제적인 단체와 개인들을 받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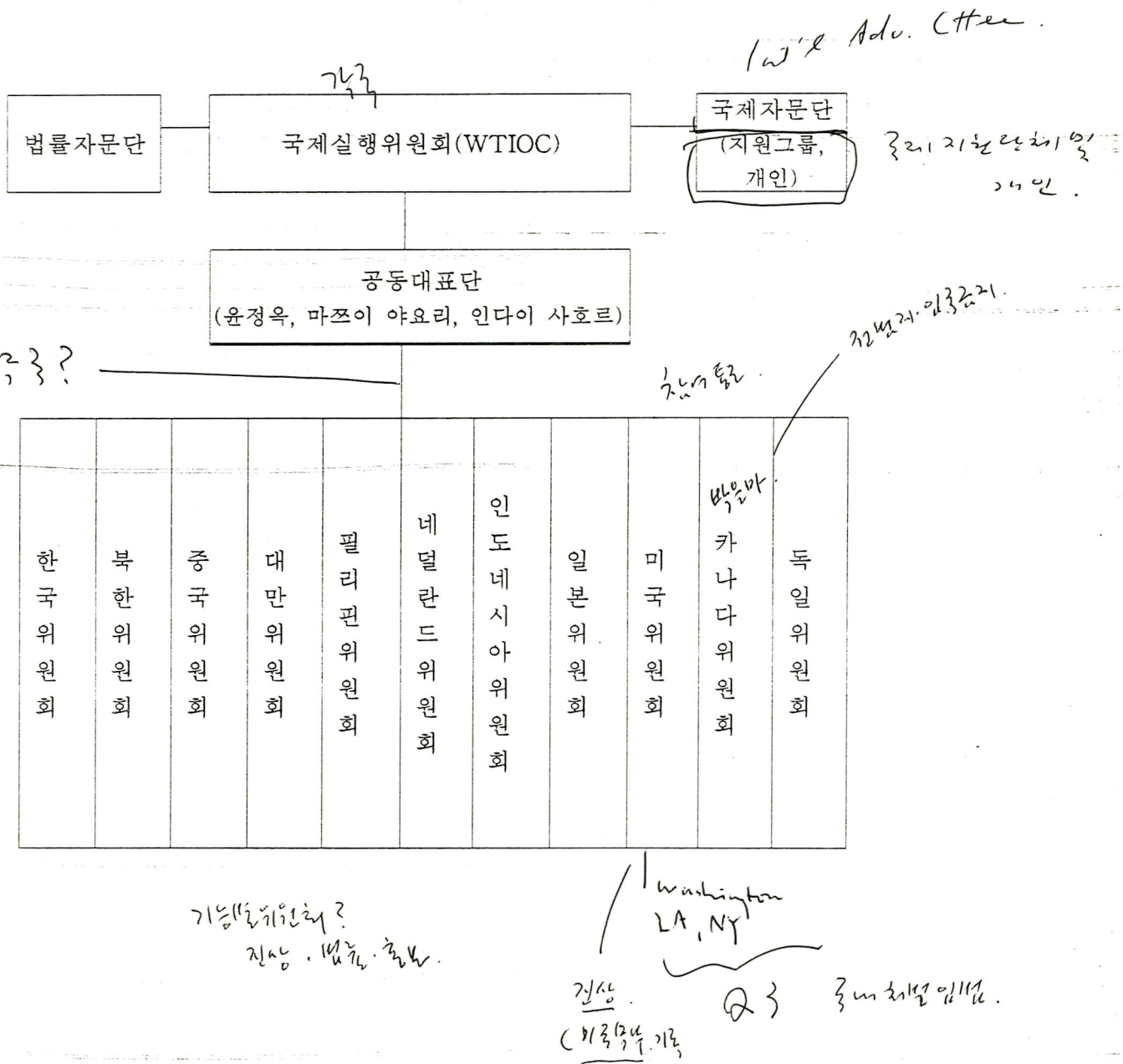
① 기존의 가해국, 피해국, 국제자문단 삼각구도의 국제실행위원회를 각 나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각 나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은 많은 나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는 있으나 반면 한국의 주도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절충안을 마련하다. 국제실행위원회는 각국의 피해자와 운동단체가 있는 경우 각 나라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결정권을 갖으며, 공동대표는 현재 마쓰이 야요리, 인다이 사호르, 윤정옥 선생이 개인자격으로 맡는 것으로 국제실행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다.

② 국제자문단을 개인과 더불어 국제적인 단체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2000년 법정을 지원하는 국제단체들을 지원그룹(supporting group)으로 만들어 가능한 많이 포함시키기로 하고 이 단체들에게 2000년 법정에 참가하고 각 나라의 운동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맡기기로 하다.

8. 조시현 교수가 제안한 합의문 형식의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원칙에 대해 축조심의를 하여 별첨자료와 같이 결의하다.

9. 합의문을 제외한 2000년 법정의 구성은 지난 5차 한국위원회가 결의한 내용대로하기로 하고, 8항의 경우 “형평과 공정성을 고려하여”라는 말을 중간에 삽입하기로 하다.

조직 개편안(한국 제안)



- 가나나 만 100년
- 자립 100년 기념사업회 차등

<별첨자료 1>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원칙

우리(변경된 구조)는 일본군 성노예 범죄에 대한 일본국가와 관련된 개인들의 국제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실행위원회를 설립하고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합의하였다.

1.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이하 2000년 국제법정)은 문명국가 간에 확립된 국제법의 원칙과 인류의 양심과 인류의 요청에 따라, 일본 제국 주의 하에서 아시아 ~~제국~~의 식민지 지배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전쟁 기간에 자행된 일본군 성노예 범죄에 대한 일본국가의 책임과 범행을 저지른 개인의 형사책임을 밝히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수립된다.

2. 2000년 국제법정은 ~~우선~~ 일본 도쿄에서 2000년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활동한다.

3. 2000년 국제법정은 다음의 문제를 다룬다:

1) 일본국가는 일본군 성노예범죄와 관련된 행위와 ~~악과~~ 진상규명, 배상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국제법상 책임을 지는가?

2) 일본군 성노예범죄와 관련된 행위를 자행한 개인들의 ~~어~~에 대한 국제법상의 책임을 지는가?

3) 다른 국가들도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을 방지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는가?

4. 2000년 국제법정은 재판부, 검찰단, 피해자로 구성된다. 2000년 국제법정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의 절차와 진행, 피해자와 증인의 보호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5. 2000년 국제법정의 재판부는 검찰관과 피해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제출하는 구두, 또는 서면의 증거를 포함하여 일본군 성노예범죄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심리할 수 있다.

6. 2000년 국제법정의 개정 전에 일본의 위법행위와 책임자들의 범죄사실과 적용법규를 명시한 기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검찰관은 피해자들이 있는 국가들을 방문하여 증인의 청취와 관련자료들을 수집하고 일본군 성노예범죄가 자행된 곳을 방문할 수 있다.

7. 2000년 국제법정의 공식언어는 영어로 하고, 필요한 경우 통역을 제공한 다.

우리는 일본군 성노예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본정부와 개인 또는 그 대리인들이 2000년 국제법정에 출두하여 증거를 제출하고 진술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 국제연합을 포함한 모든 국제기구, 비정부단체, 시민들에게 일본군 성노예제 범죄와 관련된 정보와 문서의 제공을 포함하여 2000년 국제법정의 활동에 필요한 모든 협력과 지원을 호소한다.

이것은 추가합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초안국: 한국위원회

초안일: 1999.6.24

2000년 법정의 구성에 대해

1. 도쿄 개최에 찬성한다. 다만 법정활동이 한국사회에도 효과를 증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위원회는 한국에서 Pre-tribunal symposium을 열기로 하고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
2. 법정의 관할사항이나 절차에 관하여는 굳이 '규약'이라는 이름으로 조문화하기 보다는 활동의 기본원칙에 관한 합의와 법정의 취지를 담은 취지문 형태가 좋을 것이다.
3. 국가책임과 개인의 형사책임은 각기 다른 절차에서 다루기보다는 하나의 법정에서 같이 다룬다.
4. 국제검사단을 두되 이들은 법정의 준비작업과 긴밀히 결합하여야 하며 현지방문을 통해 피해자들과의 만남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법정 전 한국방문을 추진한다). 이들은 법정에 따로 기소장을 작성, 제출하도록 노력한다. 이들의 활동에 대한 적절한 인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5. 국제검사단은 형사책임부분에 있어서 중심이 되겠지만 피해자와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국가책임 부분에서는 소송의 주체(원고)가 되며 검사단과 별도로 관련자료 제출 등 나름의 소추활동을 펼 수 있도록 한다.
6. 배심제도와 변호인제도는 채택하지 않는다.
7. 필석재판은 가능하도록 한다. 천황 개인을 어떤 형태로 법정에 세우는가는 계속 논의하기로 하다.
8.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있다. 형벌과 배상은 재판부에게 형평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양형,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한다. 그 동안 일본법정이 내린 배상액이 작은 것을 감안하여 재판부가 배상기준 등의 마련을 건설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하고 재판부는 기타의 구제조치에 관하여서도 권고할 수 있다.
9. 국제사회에 대한 협력요청: 맥두갈은 98년 최종보고서에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전시 성노예에 대한 수사진행에 역할을 담당할 것을 권고하였으므로 법정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고등판무관실의 지원과 결합의 가능성을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개진한다.